

해외농업·산림자원 반입명령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제 호				
대상자	사업자 상호		법인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	사업자등록번호	
	소재지			
반입명령의 사유 및 내용				
반입대상 해외농업·산림자원		(반입 국가 및 지역:)		
반입물량 및 반입가격				
반입시기				
손실보상에 관한 사항				
그 밖의 사항				

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33조제1항·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을 명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또는 산림청장

직인

유의사항

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33조제7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을 회수하며,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.